

## 변호인 의견서

사 건 : 2014형제24782호, 2014형제28360호

피고발인 : 유우성

2014. 3. 31.자 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출석요구서의 사건 특정과 관련한 요망사항

가. 검찰에서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사건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죄명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마치도 귀 수사팀에서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에 대한 위변조 고발 사건 뿐만 아니라, 유우성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하여도 병합하여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착오가 빚어졌습니다.

나. 귀 수사팀에서 사문서 위변조 고발 사건 이외 고발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였고, 고발 각하가 당연하다 할 사문서 위변조 고발 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하는 유

우성의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출석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2014. 4. 1.자로 양승봉 변호사가 작성, 접수하게 되었는데 그 의견서는 이 의견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 향후 출석요구서를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죄명을 특정하여 착오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출석요구서의 송달장소와 관련한 요망사항

가. 검찰에서는 유우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양승봉 변호사 사무실로 편의적으로 보냈습니다.

나. 형사절차의 피고발인 등과 같은 당사자에게 그 출석요구서의 송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향후 출석요구서의 송달 여부에 대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유우성의 주소지에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별도로 피고발인 유우성의 대리인으로 정식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상록 사무실로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주시고, 더불어 당사자에 대한 송달에 대한 위임 여부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전화 내지 팩스를 이용하는 등 송달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편의적 방식으로 합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조치를 취하여 송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원만히 협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3. 급박한 출석요구와 관련한 요망사항

가. 피고발인 유우성에 대한 출석요구는 2014. 3. 31.자로 보내면서 2014. 4. 1. 10:00 서울고등검찰청 14층 대회의실로 출석하여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현재 유우성은 국가보안법위반 항소심 재판의 준비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극우보수세력의 메카시즘 공포를 이용한 막무가내 여론호도 공세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언론을 상대로 이성과 상식에 입각하여 사안을 볼 수 있도록 설명하기에도 24시간이 부족하고, 이는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 항소심 사건의 변호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본 피고발인 변호인의 담당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데 수사의 우월적 지위의 당사자로서 검찰이 필요한 최대한의 수사활동 시간에 국가정보원 지휘부나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검사들의 국가보안법위반 증거날조 혐의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실기한 수사를 해 놓고서, 유독 피고발인 유우성에 대하여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 조사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여 변

호인측 제출의 증거의 합법성과 그 진실성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극우보수세력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긴급히 출석을 요구하면서 강제소환 검토 운운하는 기사까지 흘러나오고 있으니 이는 피고발인의 기본적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여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수사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라. 향후 추가의 출석요구서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검찰 스스로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해 보고, 정히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으로 우편으로 소환절차를 밟는 것과 아울러 적어도 송달 이후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환하거나 피고발인 및 그 변호인들과 협의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고 여러 사정과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서로의 사정을 이해한 후 출석요구 일자를 협의하여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향후 출석요구서를 보낼 경우 이러한 점 고려하여 주시고, 현재 국가정보원 위선과 검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지를 갖지 않은 채 조기에 사건을 축소하여 수사하고 끝내려는 의도로 검찰의 수사발표 일정에 맞추어 구색맞추기식으로 피고발인 유우성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 4. 사문서위변조 관련 귀 수사팀의 출석요구에 대한 피고발인의 입장

가. 귀 수사팀에서는 이미 전에 유우성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소환하였고 당시 유우성은 귀 수사팀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증거날조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소환에 응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적반하장격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조사절차로서 중국정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호인측 제출 2개 문건은 그 합법성과 내용의 진실성까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 이에 유우성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한 바 있습니다.

라.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이라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고 불의를 타파하려는 소신을 가진 검사님이시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유우성은 항소심 재판에서 귀 수사팀이 속한 검찰의 다른 부서인 공안1부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재판부 기망 및 증거날조에 의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십니까.

마.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 간첩 조작의 피해자가 분명한데, 극우보수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며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극우공안수사기관의 종사자들은 유우성은 간첩이 틀림없다고 강변하며 자신들의 죄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뒤로는 온갖 날조된 허위의 기사를 국정

원 명의를 생략하여 극우언론에 전파하고 이를 다시 극우보수단체가 인용하여 무차별적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귀 수사팀에서도 이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언론 기사를 인용한 고발 사건에 대하여 각하를 하지 아니하고 수사권을 남용하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괴롭히는데 함께 하고자 하십니까. 제발 정의로운 검찰, 불의를 뿌리 뽑는 검찰로서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시어 고발 사건을 각하하여 주시고 유우성을 괴롭히는 유일한 목적의 소환조사시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에 유우성의 귀 수사팀의 부당한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2014. 4. 2. 11시경에 출석요구에 임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귀 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이 계획적으로 위조하여 검찰이 유우성의 항소심 재판에 법원을 기망하면서 제출한 위조 문서 및 그 관련 문서들에 대하여 귀 수사팀의 철저한 계속 수사를 촉구하고 국가보안법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거나 공소변경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귀 수사팀을 방문하여 증거위조 사건의 피해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절차진술권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자 하오니 지난번과 같이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문전박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증거위조 사건의 피해자로서 유우성과 그 대리인들은 귀 수사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접수하고자 하니, 피고발인 유우성에 대한 수사팀과는 구분된다고 한다면 증거위조 수사팀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

유우성의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봉

장경욱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위조증거 수사팀(박영준검사님) 귀중